

# 고령군의회규칙

##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기 관 명 (고령군의회)	
연 월 일	20 . . .

## 1. 의결주문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.
- 나. 회의 중계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.
- 다. 의정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회의록은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,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. (안 제48조)
- 나.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(안 제48조의2)
- 다.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. (안 제48조의3)

## 4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6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

-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.
-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⑦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제3장제6절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영상회의록의 공개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회의록을 기록·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회의 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8조의3(회의의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.

② 회의의 중계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~ ⑤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</u> <u>⑦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.</u> <u>제48조의2(영상회의록의 공개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회의록을 기록·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회의 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.</u> <u>제48조의3(회의의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</u></p>

외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.  
② 회의의 중계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.